

제5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회 회의록

1. 일 시 : 2008. 05. 07(수), 14:00~16:00

2. 장 소 : 율곡관 2층 제1회의실(204호)

3. 참 석 : 총 11명 중 9명 참석

참석 평의원 : 이일영 의장, 이원희 부의장, 유승화 평의원, 이순일 평의원
유승익 평의원, 오상탁 평의원, 이화숙 평의원, 김찬영 평의원
김관영 평의원 (이상 9명)

불참 평의원 : 강태현 평의원, 박윤규 평의원 (이상 2명)

4. 개회선언

의 장 : 재적평의원 11명 중 9명의 평의원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회 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우선 회순에 따라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5. 보고사항

간사 이증한 : 2008학년도 본예산 및 2007학년도 제3차 추경예산 편성 수정사항에 대하여 예산팀장님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보고자 : 예산팀장 배영환>

1) 변동사유 : 대우재단 빌딩 임차보증금 13.5억원 환수시기 변경

- 당초 2008학년도 6월에 환수될 예정으로 2008학년도 기타자산수입으로 편성되었으나 2008년 2월 이내에 환수 완료가 결정되어 '08년 2월 이사회 상정 시 예산편성을 수정함.

2) 예산편성 수정사항

- 2007학년도 추경예산에 임차보증금 회수수입이 13.5억원 증가되었고 2008학년도 자금예산편성에서 임차보증금 회수수입이 13.5억원 차감되었으며, 해당금액을 2007학년도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으로 편성 후 2008학년도로 이월하였음.

< 간서명 란 >

의 장



① 2008학년도 본예산 편성

- 수입계정변경 : 기타자산수입 13.5억원 감소
전기이월자금 13.5억원 증가

② 2007학년도 제3차 추경예산 편성

- 수입증가 : 기타자산수입 13.5억원 증가
- 지출증가 : 차기이월자금 13.5억원 증가

(예산팀장이 2008학년도 본예산 및 2007학년도 제3차 추경예산 편성 수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의 장 : 다른 보고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결산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기획처장 김민구, 총무처장 김병관, 총무부처장 김윤기, 예산팀장 배영환, 예산팀 장주아, 경리팀장 나명순, 경리팀 엄일중, 아주대학교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경리팀 오태석, 경리팀 곽우실을 소개하다.)

6. 자문사항

의 장 : 먼저 아주대학교 측 자문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네, 그러면 아주대학교 2007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처장이 아주대학교 2007 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의 장 : 간단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과 결산은 전문성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소한 1주일 전에 자료를 전달하여 검토한 후 총무처나 기획처로 검토결과를 전달해 주시는 과정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교수대의원회의에서 논의 되었던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를 처음부터 다 검토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교수회 대의원회의에서, 미리 작성하여 보내드린 질의응답서를 중심으로 결산안을 검토하며 담당부서에서 주신 답변을 들은 후 제기된 의견들을 정

< 간서명 란 >

의 장



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자료를 주실 때 감사보고서를 함께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보고서에 다 파악되어 있는 사항들을 수치까지 다시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있으며, 대학 평의원회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이나 자원배분 등의 사항을 위주로 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서 어제 크게 2가지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하나는 수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 회계와 관련하여 등록금 수입 외에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입금 수입입니다. 부속병원에서 311억원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전출되었는데, 학교쪽에는 부속병원 전입금이 282억원으로 되어 있어, 양쪽 장부가 일치하는지 쉽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보수 부분도 조금 설명이 다릅니다.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311억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쓰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법정전입금이 법인으로부터 32억원 정도가 들어와야 하는데, 본교에 실제 들어온 것은 3억여원이며 병원은 아예 0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병원의 경우는 다른 운영비 항목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하여 나온 질문은 과연 법인은 법정전입금을 부담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학교 내부의 국유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반은 학교에서, 반은 병원에서 납부했다고 하는데, 과연 등록금으로 이 돈을 내도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입금을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의 장 : 이사회가 언제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5월 20일입니다.

의 장 : 감사보고서가 언제 나오는 것인가요?

총무처장 김병관 : 감사 부서는 학교의 어느 부서가 아니라 재단입니다. 감사보고서를 봐야한다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감사보고서를 받는 주체는 기획처나 총무처가 아닌 법인입니다.

의 장 : 그래서 이 문건을 저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총무처장 김병관 : 그 문건을 저희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지 애매합니다. 물론 공개하는 것입니다만 확정 이후에 공개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 평의원회 심의자료로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의원 유승익 : 외부감사는 이사회를 대신해서 학교를 감사하는 것인가요?

총무처장 김병관 : 네.

평의원 유승익 : 내부감사는 연례적으로 2인의 법인 감사님께서 하시지요?

총무처장 김병관 : 연례적으로 하는 내부, 외부 감사의 주체는 법인이며, 학교는

피감사인입니다.

평의원 유승익 : 그러면, 이사회에서만 회계감사를 하고 끝난다는 말씀이신데, 학교의 구성원들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학교예산이 몇 천억원이나 되는데 이사회의 감사만 받고 내부인들은 보기도 힘들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1년에 한번이라도 내부적으로 감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기획처장님과 총무처장님의 말씀에 2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보고서를 이사회 이전에 평의원회에서 공개하는 시기의 문제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감사를 의뢰한 주체가 이사회이므로 이사회에서 보고를 받는다는 문제입니다. 이사회가 감사보고서를 받는 것이 맞긴 하지만, 사립학교법에서 예산 및 결산을 대학평의원회에서 자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학평의원회에서 자문을 위해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렇다면 평의원회 명의로 감사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해당되는 공문을 법인에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평의원 유승화 : 제가 보기에는 재단과 학교의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평의원회의 설치 취지인 상호견제를 위해서라도 각각 감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 부분은 다른 대학의 사례도 보고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의 장 : 네,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상태에서 자문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의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료원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원장 김형식 : 네, 의료원 결산 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 행정부원장이 아주대학교 의료원 2007회계연도 부속병원 및 의과대학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평의원 이순일 : 법인 전출금 29억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경리팀 오태석 : 법인이 받아서 경상비로 의과대학에 줍니다.

평의원 이순일 : 262억원은 무엇과 무엇을 더한 것입니까?

행정부원장 김형식 : 임상교원 인건비 184억원과 의대운영비 78억원을 합한 것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고유목적사업비 311억원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내용을 한 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행정부원장이 고유목적사업비 311억원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다.)

고유목적사업비	311억원		
- 임상교원 인건비	184억원	} 262억원	} 282억원
- 의대운영비	78억원		
- 본교 토지매입지원	20.7억원		
- 법인 전출금	29억원	→ 법인	
의대결산			
- 전입및기부수입	303억원		} 경상비 전입
- 부속병원	261억원		
- 경상비	24억원	←	
- 산학협력단	11억원		
- 기타	0.3억원		

평의원 이순일 : 의대의 법정부담 전입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산서 상에는 의대에서 법정전입금을 13억원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것이지요.

경리팀 곽우실 : 경상비전입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과대학의 운영비로 법정부담금을 낸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전입된 경상비전입금 24억원 중 11억원을 경상비전입금, 13억원을 법정전입금으로 분리하여 계정을 기표하였어야 하나, 경상비전입금 즉 법인의 전출금을 한 계정과목으로 계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석상의 차이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렇다면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실 계획이신지요? 예산을 세우려면 수입에 대한 안정적인 예측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요. 그리고 병원에서 얼마의 돈을 어떻게 가져다 써야겠다는 판단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핵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리팀 곽우실 : 기본적인 병원의 기초 예산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원의 정책을 반영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의해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예산은 변동예산으로 기초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으나 수익을 일으키는 여러 변

< 간서명 란 >

의 장



수들 즉, 환자수, 수가변동, 고가장비 구입 등에 따라 추가 예산이 크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예산을 세우는 단계에서 얼마를 주겠다고 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돈을 어떻게 가져다 쓴다는 것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평의원 이순일 : 병원을 1년 운영하여 수익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가요?

경리팀 곽우실 :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감사보고서는 결산을 집행하는 피 감사자인 입장에서 이사회 이전에 거론할 수 없는 부분이고, 병원은 결산 후 법인과 5월 한 달 동안 수익사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합니다. 세법에서도 목적사업으로의 전입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법인세를 낼 정도의 순익이 계상된다면 당연히 법인이나 학교에 진출하는 것이 법인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나, 현재 병원은 누적된 결손으로 인해 당기 이익이 발생했다고 재무제표상 수익이 발생하진 않았으며 향후에도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비용, 증가하는 노후자산수선비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말씀하시는 수익에 대한 논의는 향후 5~10년이 지나 270억원에 대한 결손부분이 해결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 장 : 지금 저희 병원이 빛이 있기 때문이고, 다른 병원의 경우에는 한해에 150억원 이상의 이익이 남아 병원을 또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하지만 그것이 아직까지는 불법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하는 병원은 커지는 것이구요.

의 장 : 이제 결산이 상당히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재단으로 전출된 29억원 중 24억원만 의대 경상비로 전입되고 재단에 5억원이 남아 있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어제도 많은 시간을 소비했군요.

평의원 유승화 : 5억원이 안들어 왔는데 어떻게 결산이 맞는 것입니까?

행정부원장 김형식 : 법인의 수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병원회계에 의하면 병원에서 법인으로 10억원 또는 100억원을 준다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행정부원장 김형식 : 네.

총무처장 김병관 : 저희가 학교법인 대우학원에 기대하는 것은 외부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학교로 공급해주는 것이며, 병원에서 공급해주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하자가 좀 있는 것입니다.

의 장 : 네. 병원은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외부에서 도

와줄 여지가 없다면 경희대학, 을지대학과 경쟁하기 위해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한 제2, 제3의 의료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단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의료원 수입을 가지고 의료원이 계속 발전해 나가야 건강한 학교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평의원 유승화 : 네, 그런 의견을 표현할 곳이 평의원회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알려지고 해야 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와 법정부담금에 교비에서 쓰지 않아도 될 돈 30여억원을 쓴 것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의 장 : 재단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 재단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학생들의 등록금이 제대로 쓰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단에서 해야 할 일에 교비를 썼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꼭 쓰여야 할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자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 오늘 자문사항을 잘 정리하고 필요하면 재단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 장 :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 김병관 : 토지매입에 대해 제가 아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토지는 테니스코트 부근에 있는 짜투리 임야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임야를 정리하면서 아주대학교에 강제로 매입을 하라고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금액이 상당하여 법인에서는 그만한 돈이 없어 학교에서 사게 된 것입니다.

의 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7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 회계 결산(안)에 대한 자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 기획처장 김민구, 총무처장 김병관, 총무부처장 김윤기, 예산팀장 배영환, 예산팀 장주아, 경리팀장 나명순, 경리팀 엄일중, 아주대학교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경리팀 오태석, 경리팀 곽우실이 퇴장하다.)

7. 심의사항

의안 제1호 :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의 장 : 심의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중한 : 네. 3페이지에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입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간사가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의 장 : 별표2의 의생명과학과 신설에 관하여는 의과대학에서 발의한 내용입니까? 그리고 교무회의를 통과한 것입니까?

간사 이중환 : 네. 교무회의에서도 다소 논의가 있었으나 의학과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설명이 있어 통과하였습니다.

의 장 : 다른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 자유전공에 관하여 제3자가 볼 때는 뭔가 상대적으로 특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특별자격증과 연계하여 명칭을 ‘특별’ 또는 ‘자율’ 등을 붙여 고치면 어떨까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특정화하여 처음부터 해야 할 것들을 정해주고 스파르타식으로 진행 한다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의원 유승익 : 요즘 검토되고 있는 학교의 자유전공(안)은 1학년 때만 해당이 되고 2학년에는 전공을 찾아가는 추세입니다.

간사 이중환 : 아직 운영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은 없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 자유전공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서 방향이 정해지면 공청회 등을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 장 : 다른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만장일치 동의에 의하여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하다.)

8. 논의사항

간사 이중환 : 마지막으로 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평의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공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가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구성원 및 회의록 공개(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부의장 : 이와 관련하여 예전에 이순일 평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확실히 기억이 나는 부분은, 평의원들이 대학 구성원들 중 누구를 대표하여 선임 되었는가와 평의원이 공석이 되었을 때 언제 어떻게 공석이 되었는지, 기록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록 작성을 발언록 형태

< 간서명 란 >

의 장



로 할지 아니면 요약본 형태로 할지 회의록 작성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 장 : 지금까지는 발언록 형태로 작성을 했지요?

부의장 : 쟁점사항인 경우에는 기록을 담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의견이 모아진 경우라면 요약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 장 : 그러면 이슈가 없는 경우에는 요약해서 작성을 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을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간사 이중환 : 그러면 제5차 회의록 작성은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습니까?

평의원 이순일 : 우선은 기존과 같이 발언록 형태로 작성을 하고 평의원들께서 내용을 검토하시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김찬영 : 저는 평의원회에서 이처럼 중요한 사항이 논의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이 다루어지는데 학생대표가 빠진 상태로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학교에서는 전임 학생회장이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문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전임 학생회장이 보낸 공문의 내용을 보면, 학생대표가 들어간다면 마땅히 총학생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학생대표가 1인이 되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학생대표 1인이 들어와서 이런 중요한 내용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곳에 들어온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런 중요한 내용이 학생대표 없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대표 2명에 대한 동의가 평의원회에서 이루어져 그것이 이사회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이사회에서도 평의원회를 인정한다는 것이 되며, 그렇지 않고 묵살한다면 평의원회도 묵살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 장 : 그 뿐 아니라 직원의 경우도 직급제한이 많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해야지요.

평의원 김찬영 : 학생대표가 참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의원회가 개최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대표의 수가 2인이 되지 않으면 저도 참석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저희가 평의원회 시작 이전에 학생대표에 대해 몇 차례 확인을 했고, 적법하게 학생대표가 선임됐다고 해서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직원 직급제한 문제와 함께 한 번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모아 정관 개정(안)을 빠른 시간안에 만들어 건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김찬영 : 학생회장이 동의하지 않은 평의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진행이

되는지 답답합니다.

의 장 : 간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간사 이중한 : 저희가 학생처와 총학생회에 직접 문서를 전달하고 전화통화도 했
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으나 싶구요, 학생처에서 보낸 추천 공문
을 가지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의 장 :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정관 개정이니, 몇 분이 만나서 논의를 하고 그
내용을 평의회회에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여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평의원 김찬영 : 정관 개정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의 장 : 예를 들면 평의원 인원이 11명일 필요가 없다든지, 직원의 직급제한 문제
등 어떤 것이든지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합의가 도출되면 진행하는 것으로 하지요.

부의장 : 그렇다면 다음 번 회의에서 그 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
면 보완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정관 개정을 위한 문안이 있을 것입니다. 관련 조항을 모아서
정리하고 회의자료 작성은 간사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붙임2의 평
의원 구성원 중에서 간사님은 표 밖에 표시하는 것이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간사 이중한 : 알겠습니다.

의 장 : 다음 회의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 수요일 오후 4시
괜찮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그 날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평
의원들께는 연락을 드려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9. 폐회선언

의 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5차
이주대학교대학평의회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2008년 5월 7일

의 장 이 일 영

(서명) 

부의장 이 원 희

(서명) 

평의원 유 승 화

(서명)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 순 일	(서명) 이순일
평의원	유 승 익	(서명) 유승익
평의원	오 상 탁	(서명) 오상탁
평의원	이 화 숙	(서명) 이화숙
평의원	김 찬 영	(서명) 김찬영
평의원	강 태 헌	(불참)
평의원	김 관 영	(서명) 김관영
평의원	박 윤 규	(불참)
간 사	이 중 한	(서명) 이중한
기 록	김 주 용	